

Linking the world, Building relations

2025년 안전보건 관리계획

2024. 12.

전 북 국제 협력 진흥원

목 차

□ 안전 · 보건 경영방침	1
Ⅰ. 안전경영 추진체계	2
Ⅱ. 추진개요	3
Ⅲ. 안전관리 대상 시설현황	4
Ⅳ. 안전사고 현황	4
Ⅴ. 2024년 활동실적	5
Ⅵ. 2025년 추진계획	8
Ⅶ. 향후일정	12
Ⅷ. 참고자료	13

안전·보건 경영방침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은 도민과 임직원의 생명과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모든 임직원의 책임 의식과 적극적 의무이행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경영기반을 구축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경영을 선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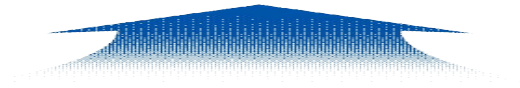
1. '작은 사고' 등 '재해·재난'을 전사적으로 차단하고, 특히 '중대재해' 발생은 철저히 방지한다.
2. 위험성 사전 예측 등 위험 요인을 제거하여 도민과 임직원의 안전을 보호한다.
3.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안전 의식 제고로 안전 문화를 정착한다.
4. 안전보건 관련 법규와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여 안전보건 경영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5. 본 방침을 모든 도민과 임직원에게 공개·실천하여 안전보건 경영을 확립한다.

2024. 12.

전북국제협력진흥원

VISION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조성으로 공공기관 사회적 책임 실현



목표

중대산업재해 없는 지속 가능한 경영 인프라 조성

추진전략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안전보건
이행 지원

모니터링 체계화

주요 추진 과제

①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 및 구축으로
체계적 안전사고
예방·점검② 안전사고 총괄관리
기능 강화③ 시설물 보수·점검
등 취약시설 기능
보강① 이용 고객 및 전
직원 안전보건 사고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② 재난 사고 합동훈련
참여 및 대피 훈련
실시③ 용역 수행 업체
대상 안전보건관련
이슈 전파① 안전보건 의무이행
현황 점검② 고객 안전 제안
의견수렴 및 개선
절차 마련③ 자체 안전점검
추진

II.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안전보건교육, 유해·위험 방지조치

□ 중대산업재해 개요

- 근 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 대 상 : 전직원
- 산업재해 정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산업재해	중대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 설비 · 원재료 · 가스 · 증기 ·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등의 업무로 사망, 부상, 질병에 걸리는 것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 유해 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III. 안전관리 대상 시설현황

□ 전북국제협력진흥원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효자동 3가) 5층
- 시설규모 : 계약 면적 833㎡(전용면적 447.3㎡)
- 안전관리 대상 시설현황 : 해당 없음(전주상공회의소 건물 임차)
- 일반 시설물 현황

시설유형	주요 시설물	위험 요인	사고 유무
사무공간	- 원장실, 사무실, 회의실 등 - 규모 : 303㎡	無	無
	- 문화교류 라운지, 물품보관실 등 - 규모 : 76.2㎡	無	無
	- 교육장 - 규모 : 68.1㎡	無	無

IV. 안전사고 현황

- 설립 이후, 산업재해 발생 현황 0건

(2024. 12.기준)

구 분		평 균	2024	2023	2022
총 사고 발생건수		-	-	-	-
사망사고 발생건수		-	-	-	-
인명	계	-	-	-	-
	사망자 수	-	-	-	-
	부상자 수	-	-	-	-

V. 2024년 활동실적

□ 2024년 추진내용

- 상·하반기 중대재해 예방 정기점검을 통한 유지관리 수준 제고
- 임직원 대상 소방안전교육 및 합동소방훈련(재난안전훈련) 실시
- 전직원 대상 산업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화
- 안전보건관리규칙 제정(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 2024년 상·하반기 중대재해 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

- 2024년 상·하반기 중대재해 안전점검 계획 및 결과보고

상반기 중대재해 안전점검 결과보고

등록번호	기획관리팀-1583
등록일자	2024-05-14
결재일자	2024-05-14
공개구분	공개

주임	팀장	실장	원장
김은지	유하나	이경은	05/14 전결 김대식
협 조			

2024년 상반기 안전점검 결과 보고

상반기 중대재해 안전점검 결과보고

등록번호	기획관리팀-3427
등록일자	2024-10-29
결재일자	2024-10-30
공개구분	공개

차장	차장	실장	원장
김성수	대결 김성수	이경은	10/30 전결 김대식
협 조			

2024년 하반기 안전점검 결과 보고

하반기 중대재해 안전점검 결과보고

등록번호	기획관리팀-1583
등록일자	2024-05-14
결재일자	2024-05-14
공개구분	공개

주임	팀장	실장	원장
김은지	유하나	이경은	05/14 전결 김대식
협 조			

2024년 상반기 안전점검 결과 보고

하반기 중대재해 안전점검 결과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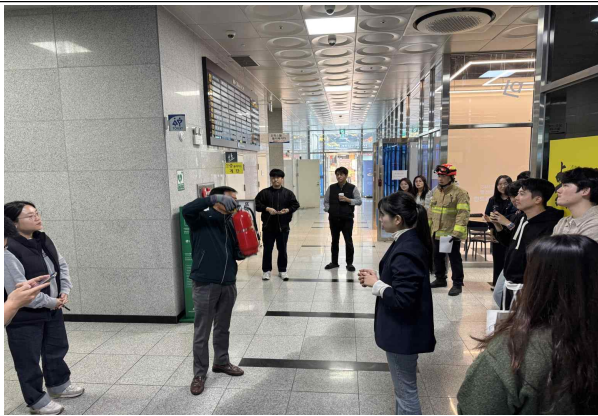
등록번호	기획관리팀-3427
등록일자	2024-10-29
결재일자	2024-10-30
공개구분	공개

차장	차장	실장	원장
김성수	대결 김성수	이경은	10/30 전결 김대식
협 조			

2024년 하반기 안전점검 결과 보고

□ 소방안전교육 및 합동소방훈련(재난안전훈련) 실시

- 교 육 명 : 2024년 소방안전교육 및 합동소방훈련 실시
- 참여대상 : 전직원
- 장소/일시 : 상공회의소 1층 로비 / 2024. 11. 22.(금)
- 훈련내용
 - 응급 현장 대응 관련 소방 기본교육(CPR, AED, 소화기 사용법 등)
 -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며 화재 예방의 중요성 강조
- 운영사진



☐ 산업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화

- 전직원 대상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의무화하도록 교육계획 수립

산업안전보건교육 수료증①	산업안전보건교육 수료증②
[발급번호 제 2024-46822199 호] 수료증 성명 : 임다정 기관명 : (재)전북국제협력력진흥원 직급 : 9급 교육과정 : 2024 안전보건교육 하반기(사무 및 판매 근로자_기타사업)_무재해 (2024-11-05 ~ 2024-12-04 총 4시간) 위 사람은 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4 년 11 월 11 일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인 	[발급번호 제 2024-47190481 호] 수료증 성명 : 김성수 기관명 : (재)전북국제협력력진흥원 직급 : 7급 교육과정 :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가행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교육 (2024-11-22 ~ 2024-12-21 총 1시간) 위 사람은 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4 년 11 월 22 일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인 

☐ 안전보건관리 규칙 제정

- 제정사유 :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규칙 제정
- 주요골자 : 안전보건 조직, 인력 명확화 및 사고조사·대책수립 규정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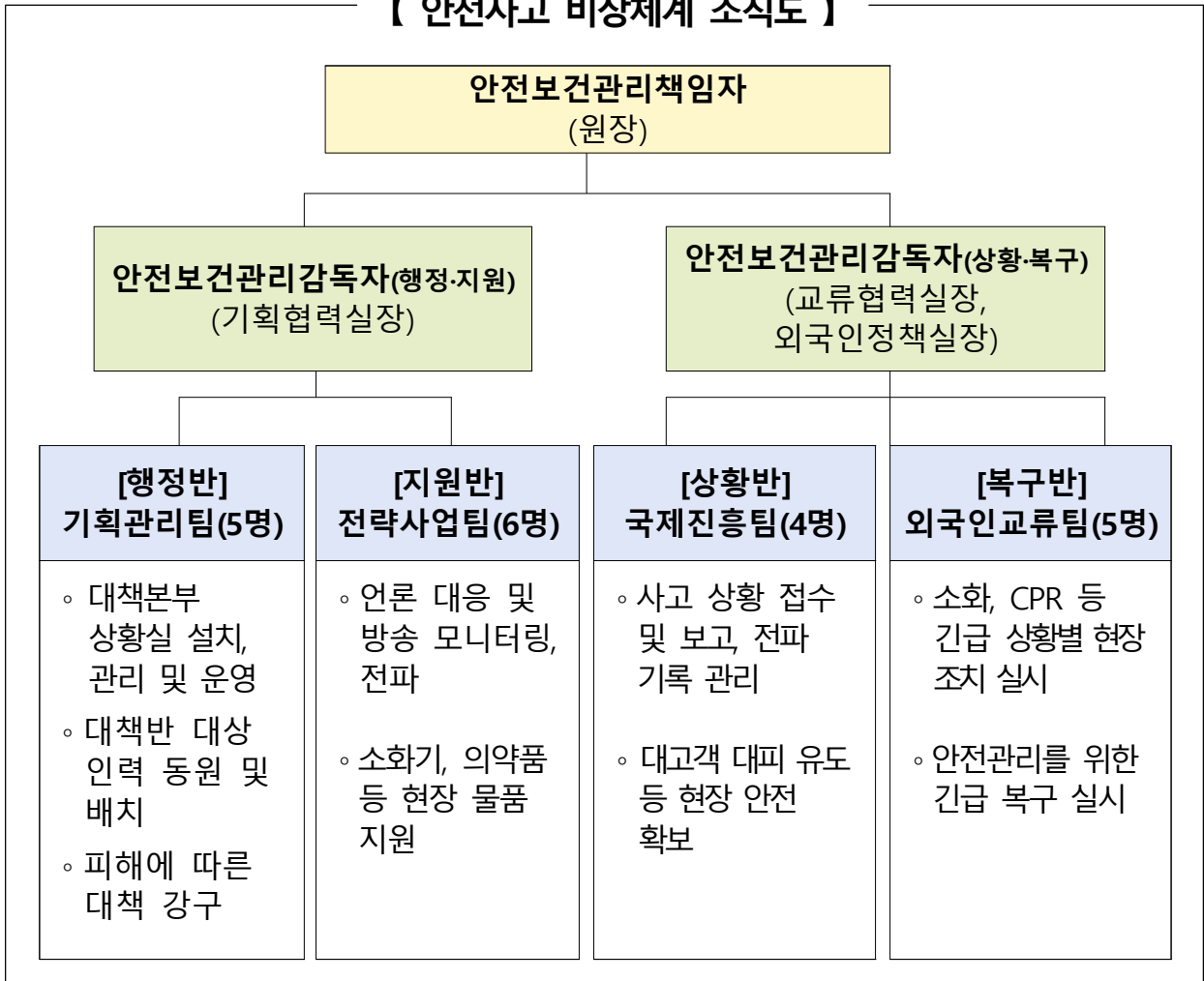
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 안전보건 담당자 및 주요업무

구 분	담당자	담당업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원장	안전사고 업무 총괄
안전보건관리감독자 (행정·지원)	기획협력실장	안전사고 행정·지원 지휘, 대외 협력
안전보건담당자 (행정)	기획관리팀장	- 대책본부 상황실 설치, 관리 및 운영 - 대책반 대상 인력 동원 및 배치 - 피해에 따른 대책 강구
안전보건담당자 (지원)	전략사업팀장	- 언론 대응 및 방송 모니터링, 전파 - 소화기, 의약품 등 현장 물품 지원
안전보건관리감독자 (상황·복구)	교류협력실장 외국인정책실장	안전사고 행정·지원 지휘, 대외 협력
안전보건담당자 (상황)	국제진흥팀장	- 사고 상황접수 및 보고, 전파기록관리 - 대고객 대피 유도 등 현장 안전 확보
안전보건담당자 (복구)	외국인교류팀장	- 소화, CPR 등 긴급 상황별 현장 실시 - 안전관리를 위한 긴급 복구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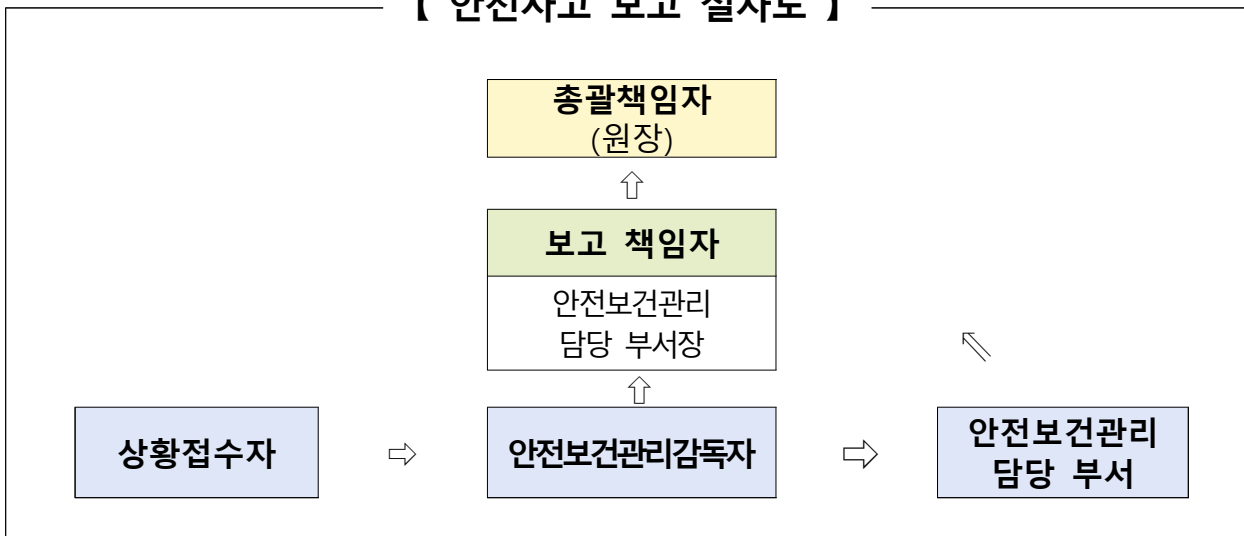
□ 안전 조직 구성

【 안전사고 비상체계 조직도 】



□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절차도

【 안전사고 보고 절차도 】



□ 안전보건 관련 예산현황

○ 소요예산 : 금오백팔십일만오천원(₩5,815,000)정도

(단위 : 천원)

세 목	산 출 내 역	소요금액	비 고
교육훈련비	교육훈련	400	
공공운영비	영업배상 책임 보험	90	
공공운영비	일반화재보험	50	
공공운영비	승강기유지비	270	
공공운영비	시설유지비(사무실)	2,200	
공공운영비	수선유지비	620	
공공운영비	건물화재보험료	245	
공공운영비	냉난방시설 유지 경비	1,940	

○ 소요예산 : 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2 안전보건 이행 지원

① 전 직원 안전보건 교육 실시

○ (내용) 안전보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및 구체적 의무 사항, 관련 판례 등

교육 대상	주기	교육 방법	교육내용
전 직원	연 1회	온라인 또는 집합 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의무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에게만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부과하고있을 뿐,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추가 안전보건 교육 없음

② 재난 안전 훈련 실시

- (추진시기) 연중(1회)
- (추진내용) 화재 발생, 지진 등 대피 모의훈련 등 전 직원 참여
※ 입주 기관 공동으로 재난 대피 훈련 참여

③ 도급·용역 등 사업 관리 점검

- (이슈 전파) 계약체결 및 사업 추진 시 등 안전보건 이슈 안내
- (점검) 사업 추진 시 안전보건 이행 현황 점검(1회)

3 모니터링 체계화

① 안전보건 의무이행 현황 점검

- (책임자 지정) 기획협력실장, 기획관리팀장
- (주요내용) 안전 저해 요소 발견 및 신고, 민원 접수 및 개선
- (시설점검) 제세동기, 소화기, 완강기 등 관리 점검

② 의견수렴 및 개선 추진

- (추진시기) 연중 1회
- (주요내용)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 내부고객 만족도 조사 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관련 항목 포함

- (개 선) 차년도 계획 수립 시 개선사항 반영 노력

③ 안전점검 실시

- (목 적) 사업장의 유해·유해 요인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지원
- (절 차) ① 평가대상 선정 등 사전 준비→ ② 중점 점검 사항 파악→ ③ 안전 점검 계획 수립 및 실행→ ④ 안전점검 실시 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 추진 시기, 방법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의거 하여 실시

- (추진시기) 반기별 1회 이상 ※ <붙임2> 안전점검표

VII. 향후일정

시기	교육내용	비 고
수시	시설물 이용 고객 대상 안전 교육 실시	사업 추진 시
연중	산업안전보건 교육 실시	연 1회
	재난 안전 훈련 실시	연 1회
반기	안전점검 실시	<붙임 2> 안전점검표

VIII.

참고자료

붙임 1.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의무조치 이행사항

항 목	내 용/역 할	법 령	해당 여부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 사업장별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산안법 제15조1	○
안전보건관리책 임자 선임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산안법 제15조 시행령 제14조	
관리감독자 지정	◦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	산안법 제16조, 시행령 제15조	○
안전관리자 선임/위탁	◦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1,000명 이상인 경우 2명 이상 선임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은 전담인력 선임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은 전문기관 위탁 가능	산안법 제17조 시행령 제16~19조	
보건관리자 선임/위탁	◦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5,000명 이상인 경우 2명 이상 선임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은 전담인력 선임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은 전문기관 위탁 가능	산안법 제18조 시행령 제20~23조	
산업보건의 선임/위촉/위 탁	◦ 근로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취하는 사람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은 전담인력 선임시 1명 선임, 위촉시 상시근로자 2,000명당 1명 위촉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은 전문기관 위탁 가능	법 제22조, 시행령 제29~31조	
산업안전보건위 원회 구성·운영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산안법 제24조, 시행령 제34~39조	
안전보건관리 규정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조직, 교육,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정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산안법 제25조, 시행규칙 제25조, 별표2 등	
안전보건교육 실시	◦ 전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법의 일부를 적용 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사 업지원 서비스업)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대상 제외	산안법 제29조, 시행규칙 제26조,	
위험성평가 실시	◦ 전 사업장(매년 실시)	법 제36조	○
안전·보건 업무 전담 조직 구성	◦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전문인력 배치 3명 이상)	중대재해처 벌법 시행령 제4조2	

붙임 2.

안전점검표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양호	개선 필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중대산업재해 대비 안전계획 작성 및 준수					
•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 조치사항별 담당부서 역할 지정					
• 계획에 따른 조치사항 준수					
• 사무실 등 업무공간 매뉴얼 비치					
2.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					
• 사무직 근로자(연 1회) 교육 실시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 안전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					
• 일반건강진단(2년 1회)					
• 안전점검(연 2회)					
4.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의무 이행 확보					
• 도급·용역·위탁 추진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징구					
5. 시설 안전 점검					
• 출입구 및 비상구 주위에 적재물 제거					
• 유도등은 상시 재생					
• 소화설비 구비(소화기)·관리					
• 사무실 및 창고 내·외부 정리정돈 상태					
• 난방기구 주위에 인화성 물질이나 위험한 물건 제거					
•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 출입문 자동열림장치 설치					